

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3. 21.

제안자 : 김은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는 제명 수정,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 분리 및 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구체적 기간 설정을 통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,
- 위원회 임기 조항에 전문분야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연임 제한관련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안 제명 수정
- 나.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분리(안 제3조)
- 다. 전문분야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관련 예외 조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심의 기간 명확하게 규정(안 제9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 을 “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 으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” 를 “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 회” 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” 를 “군용비행장 소 음대책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시장이 된다” 를 “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하되,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” 를 “위촉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” 을 “부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” 를 “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7일 이상” 을 “7일간의 심” 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비밀준수 의무)” 를 “(비밀엄수 의무)” 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” 를 “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심의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비밀 준수” 를 “비밀 엄수” 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<u>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<u>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·2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</p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-----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
③ (원안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위촉 한다.

1. ~ 4. (원안과 같음)

⑤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(원안 제5항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 다만,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원안과 같음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(서면심의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비밀준수 의무) ① · ② (생략)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음)

② -----
----- 부위원장-----

-.

제8조(회의의 운영) ① ~ ③ (원안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-----
-----.

⑤ (원안과 같음)

제9조(서면심의) ① (원안과 같음)

② -----
----- 7일간의 심-----

-----.

제12조(비밀엄수 의무) ① · ② (원안과 같음)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